

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기업지원사업 2차 통합공고

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는 「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」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기회발전특구 특화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와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7월 6일

(재)전북지역산업진흥원장, 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 지원 개요

□ 지원목적

- 전북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(스마트팜, 바이오헬스케어, 기능성식품, 전동화농업기계 및 부품산업)[붙임 1 참조] 및 기회발전특구 특화산업(자동차부품·특장차, 탄소섬유, 동물용의약품·건강기능식품, 라이프케어)[붙임 2 참조]의 혁신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과 확산

□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

지원유형		지원대상	지원금	지원 건수	지원기관
R&D 연계 지원	시제품 제작	지역혁신 클러스터육성(R&D) 신규/계속/종료 연구개발기관	30백만원	1건 이상	전북지역 산업진흥원
	인증·성능·시험분석		10백만원	1건 이상	
	특허출원·등록		5백만원	1건 이상	
	사업화마케팅		40백만원	1건 이상	
수요 맞춤형 지원	공정개선	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소재한 혁신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	40백만원	4건 이상	전북 테크노파크
	시제품 제작		30백만원	3건 이상	
	특허출원·등록		5백만원	3건 이상	
	사업화마케팅		30백만원	1건 이상	
사전기획			10백만원	3건 이상	
컨설팅			20백만원	1건 이상	전북지역 산업진흥원

2

지원 내용

□ 지원기간

-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6. 10. 30.(금)

□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(중복 신청 가능)

- R&D 연계지원

지원프로그램	세부내용	지원금액	추진체계
시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제품의 기능추가 및 성능향상 목적 또는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▶ 결과물: 완성된 시제품 	최대 30백만원 (VAT 별도, 기업부담금 10% 이상)	단독신청 ※ 공급기업, 인증기관 견적서 첨부 필수
인증·성능·시험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&D와 관련된 시제품 대상 ○ 국내외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, 제품신뢰성 인증, 국내외 인증획득 및 컨설팅 지원, 효능·안전성 평가 시험성적서 획득 등 지원 ▶ 결과물: 인증서(KC, KS 등), 시험성적서, 분석 보고서, 컨설팅 보고서 등 	최대 10백만원 (VAT 별도, 기업부담금 10% 이상)	
특허출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발명 / 실용신안 특허출원 ▶ 결과물: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증 또는 등록증 ○ 해외 발명 특허출원 (PCT포함) ▶ 결과물: 해외 PCT 출원증 또는 등록증 	최대 5백만원 (VAT 별도, 기업부담금 10% 이상)	
사업화 마케팅 (온라인 전시관 구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외 온라인 상 전시할 수 있는 온라인 기업 전시관 구축 ▶ 결과물: 온라인 전시관 	최대 40백만원 (VAT 별도, 기업부담금 10% 이상)	

- 컨설팅

지원프로그램	세부내용	지원금액	추진체계
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전문가 컨설팅 (사업화전략, 시장분석,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) ▶ 결과물 : 진단보고서 및 컨설팅 수행보고서 	최대 20백만원 (VAT 별도, 기업 부담금 10% 이상)	단독신청 ※ 공급기업 견적서 첨부 필수

○ 수요맞춤형지원

지원프로그램	세부내용	지원금액	추진체계
공정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성 향상, 원가절감, 불량감소 등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▶ 결과물: 결과보고서 	최대 40백만원 (VAT 별도, 기업부담금 10% 이상)	단독신청 ※ 공급기업, 인증기관 견적서 첨부 필수
시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제품의 기능추가 및 성능향상 목적 또는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▶ 결과물: 완성된 시제품 	최대 30백만원 (VAT 별도, 기업부담금 10% 이상)	
특허출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 발명 / 실용신안 특허출원 ▶ 결과물: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증 또는 등록증 해외 발명 특허출원 (PCT포함) ▶ 결과물: 해외 PCT 출원증 또는 등록증 	최대 5백만원 (VAT 별도, 기업부담금 10% 이상)	
사업화 마케팅 (온라인 전시관 구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외 온라인 상 전시할 수 있는 온라인 기업 전시관 구축 ▶ 결과물: 온라인 전시관 	최대 30백만원 (VAT 별도, 기업부담금 10% 이상)	

○ 사전기획

지원프로그램	세부내용	지원금액	추진체계
사전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 R&D 사업 수주를 위한 사전기획 지원 전북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단위거점 유관기관 협의체 중심으로 맞춤형 기획 추진 및 신규 R&D 아이템 발굴 지원 ▶ 결과물: 사업계획서 	최대 10백만원 (VAT 별도, 기업부담금 10% 이상)	.주관: 기업 .참여: 유관 기관 필수 (전북 소재자)

3

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신청자격

○ R&D 연계 지원

- 전북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(R&D) 참여한 신규/계속/종료과제 연구개발기관

○ 수요맞춤형지원, 컨설팅, 사전기획

- 다음 ①, ②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.

① 소재지(1) 또는 (2) 해당시

(1) [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]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소재한 혁신기업 또는 사업기간 이내(~2026. 10. 30.)에 이전 예정인 기업 **[별첨 1 참조]**

※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 등)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

*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된사업장 명세(증명)의 ‘사업장 소재지’ 기준으로 기업 위치 확인

(2) [기회발전특구 특화산업]접수마감일 현재 전북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 (착공 이후) 기업 **[별첨 2 참조]**

(참고 : 착공→준공→완공 등)

※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투자 예정기업이 협의(MOU, LOI 등)하여 지정된 지역에 착공하여 투자를 이행한 기업

② KSIC 코드 (20개 코드 중 해당) -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 기업 제외

구분	전북 특화산업 KSIC 코드			
핵심 (5)	10797	건강 기능식품 제조업	10799	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
	10801	배합사료 제조업	21210	완제 의약품 제조업
	29210	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		
연관 (15)	01123	종자 및 묘목 생산업	10129	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(가금류 제외)
	10309	기타 과실·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	10713	과자류 코코아 제품 제조업
	10742	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	10743	장류 제조업
	10751	도시락류 제조업	10759	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
	10792	차류 가공업	20311	질소 화합물, 질소인간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
	20423	화장품 제조업	204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
	26299	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	29299	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
	62010	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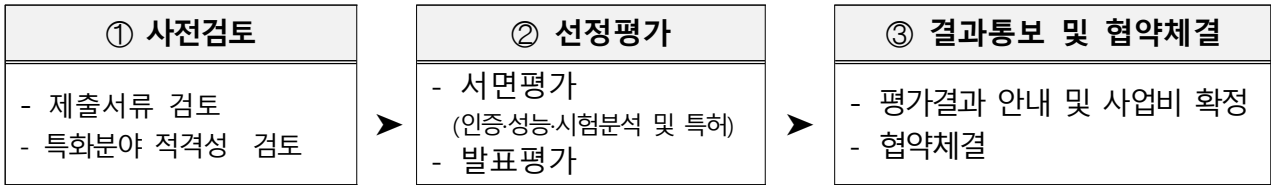
□ 지원제외 대상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기업/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
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- 부도, 휴·폐업, 국세(지방세) 체납 처분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,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공고일 현재 기업/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신청기관 또는 기업 소속이 아닌 경우
 -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미등재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지원받았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의 지원받은 내용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의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
-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파산·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단,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5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
- 기업/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 사업별 기본목적, 지원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4

평가방법 및 평가지표

□ 평가방법



① 사전검토

-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사업분야 및 계획의 적정성 등 사전 서면 검토

② 선정평가

- 서면평가
 - 인증·성능·시험분석 및 특허출원·등록에 한함
- 대면(발표)평가 :
 - 평가시간 : 과제별 30분 내외(10분 발표, 20분 질의응답)
 -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발표한 뒤, 평가위원·피평가자 간 질의응답 진행
 - 연구책임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 등을 공문으로 통보 필수

③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

- 선정기준
 - 산술평균에 따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경우 “지원가능” 으로, 70점 미만인 경우 “지원제외” 로 분류함
 - ※ 단,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에 따라 높은 순위를 우선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및 지원 범위(지원금액, 지원 건수 등) 조정 가능
-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이후 협약체결 진행

④ 사업비 지급

- 지원기관에서 최종평가 및 결과물 검수 후 수혜기업으로 사업비 지급
- 사업비는 과제 수행 후 수혜기업의 확정 지원금액에 따라 지급하며, 사업비 지급 시 기업부담금과 VAT는 제외하고 지급함.
- 비영리기관의 경우, 사업비 지급 시 VAT 포함하여 지원금 지급함.

□ 평가기준

○ R&D연계지원 및 수요맞춤형지원

평가항목	중점 평가항목	배점
목적 및 필요성	• 목적의 명확성 및 지원 필요성	20점
추진내용 및 방법	• 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• 추진 방법 및 기간의 실현 가능성 • R&D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관성(R&D 연계지원만 해당)	40점
파급효과	• 제품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• 경제적, 사회적 파급력	30점
예산 적정성	•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	10점
합 계		100점

○ 컨설팅

평가항목	중점 평가항목	배점
목적 및 필요성	• 목적의 명확성 및 지원 필요성	20점
추진내용	• 추진체계 적절성 및 전략-목표-성과의 연계성	20점
컨설팅 적절성	• 컨설팅을 위한 기업의 시급성	20점
컨설팅기관 역량	• 컨설팅기관 및 참여인력의 수행역량	20점
활용방안	• 컨설팅 활용성, 후속연계사업 방안	10점
기대효과	• 경제적, 사회적 파급력	10점
합 계		100점

○ 사전기획

평가항목	중점 평가항목	배점
목적 및 필요성	• 목적의 명확성 및 지원 필요성	20점
기술성	• 차별화 전략 및 구현(실현) 가능성	20점
시장성	•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성과창출 전략	20점
상생 연계 방안	• 주관·참여 간 상생 연계 방안	10점
예산 집행 계획	•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	10점
파급효과	• 국가공모 과제 등 정책사업으로 연계 가능성 등	20점
합 계		100점

5

추진일정

추진단계	추진내용	일정
사업 공고 및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R&D 종합정보시스템 공고 및 신청서 접수 • 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	7. 6.(월) ~ 7. 16.(목)
↓		
사전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서, 신청서류 등 신청 내용 관련 적격성 사전 검토 	~ 7. 21.(화)
↓		
선정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	7. 23.(목) ~ 7. 24.(금)
↓		
결과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기업 선정결과 개별통지 	~ 7. 31.(금)
↓		
협약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	~ 8. 10.(월)
↓		
지원사업 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사업 수행 	8. 10.(월)~ 10. 30.(금)
↓		
진도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방문 및 컨설팅 진행 	9월 중
↓		
결과 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•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	11. 30.(월)
↓		
최종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	~ 12. 11.(금)
↓		
사업비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북진흥원/전북TP → 수혜기업 	~ 12. 18.(금)
↓		
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(지원성과 분석 및 홍보, 후속지원 연계) 	

※ 상기 일정 및 추진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6

접수방법 및 문의처

□ 공고 및 접수기간

- 공고기간 : 2026. 7. 6.(월) ~ 7. 16.(목)
- 접수기간 : 2026. 7. 6.(월) ~ 7. 16.(목), 18:00까지

□ R&D 연계지원 및 컨설팅

- 접수방법 : 지역 혁신 정보 시스템 온라인 접수
- 접수처 : <https://www.riis.or.kr>
- 접수기한 : 2026년 7월 16일(목) 18:00까지
 -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데이터 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 완료 요망(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)
 - 접수 시 첨부파일에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첨부 필수
- 문의처

지원프로그램	지원기관	담당자	연락처
- R&D연계지원	(재)전북지역산업진흥원	정상미 연구원	063-278-9733 tkdal1115@riia.or.kr

□ 수요맞춤형지원 및 사전기획

- 접수방법 : R&D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
- 접수처 : <http://rnd.jbtp.or.kr>
- 접수기한 : 2026년 7월 16일(목) 18:00까지
 -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데이터 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 완료 요망(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)
 - 접수 시 첨부파일에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첨부 필수
- 문의처

지원프로그램	지원기관	담당자	연락처
- 수요맞춤형지원 - 사전기획 지원	(재)전북테크노파크	손현화	063-720-3715 handhh@jbtp.or.kr

7

제출서류

순번	제출서류	부수
1	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각 1부
2	사업자등록증 (해당시) 공장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·연구전담부서, (예정)인증서	1부
3	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	1부
4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-국 세: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-지방세: 민원24(https://www.gov.kr)	1부
5	2022년 ~ 2024년 표준재무제표(국세청 발급본)	각 1부
6	과제참여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	1부
7	견적기업별 사업자등록증	각 1부
8	견적기업별 날인된 견적서(산출세부내역必)	각 1부
9	견적기업별 포트폴리오 및 소개자료	각 1부
10	기회발전특구 기업인 경우,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 확인서 또는 투자이행 (착공)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* 착공신고서, 투자이행신고서, 투자확인서 등(별도양식 없음)	1부
11	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이전 확약서(해당시)	1부

[공통사항]

1.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**날인 필수**
2. 모든 제출서류는 **공고일 이후 유효분**에 한함
3.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에 **주민번호 기입** 필수 (수집목적 : 금융권 채무불이행 정보조회)

8

유의사항

- 등록기간 내에 전산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접수 불가
-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예산을 초과하는 사항은 수행기업이 추가 부담하며, 집행기준 및 절차는 지원기관의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진행
- 수혜기업은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, 지원금은 평가결과와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- 부가세, 관세, 특허청 관납료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.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제외 및 협약 취소가 될 수 있음.
-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-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, 향후 사업 성과분석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과 모니터링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.
- 공공재정환수법 시행
 -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 (2023.12.1.9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 - 허위 청구 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) : (받은 지원금)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
 - 과다청구 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는 경우) : (받은 지원금 -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 제재부가금 부과
 - 목적외 사용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: (정해진 목적·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 제재부가금 부과
- 기타사항
 - 부가세, 관세, 특허청 관납료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
 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